

부산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가단3335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성진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준

변론 종결 2022. 3. 31.

판결 선고 2022.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①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99285/3279270지분에 관하여 2020. 12.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②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4. 접수 제767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의 가족관계

(1) D는 1976. 1. 13. E와 혼인한 후, 그 슬하에 C, F, G를 출산하였는데, 1992. 2. 13. E와 이혼하였다가, 2010. 12. 9. 다시 혼인하였으나, 2014. 10. 14. 최종적으로 이혼하였다.

(2) 한편 D는 그 후 피고와 혼인하였다.

나. D와 E의 2018. 11. 14.자 합의

(1) D는 종래 부동산업에 종사하면서 E와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협의이혼 이후 E와 그 재산분할에 관해 다툼이 생겼다.

(2) 이에 D는 2018. 11. 14. E와 'E와 자녀들 명의로 되어 있는 아래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 명의는 D 또는 D가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이전한다. ① 충남 당진군 H 임야 중 G 지분 1/2, ② 서산시 I 임야 중 C 지분 1/2(이하 '이 사건 I 토지'라고 한다), ③ E 소유의 충남 당진군 J, K 및 L에 관한 지분 전부(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④ 부산 강서구 M[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 C는 위 2토지 중 99285/3279270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임야 중 C, F, G 명의의 지분 중 1/2(자녀 명의로 된 부동산은 E가 책임지고 이전해 준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다. 이행보증보험 계약

원고는 2020. 7. 30.경 C와 '① 피보험자 (주)N(이하 'N'이라 한다), ②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③ 보험기간 2020. 7. 30.부터 2022. 7. 29.까지, ④ 보증내역 : 보험회사 수수료 반환채무 지급보증'의 이행보증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D의 제소

D는 2020. 11. 5. E와 자녀들(C, F, G)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7727)을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마. 보험사고의 발생

C는 N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던 중, 2020. 12. 1.경 모집한 보험계약의 미유지로 인한 환수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N이 2021. 2. 9.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3. 9. N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바. 처분행위

(1) C는 2020. 12. 4.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20. 12. 3. 증여'(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C는 2020. 12. 4. E에게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2020. 12. 3. 증여계약의 합의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로하여 주었고, E는 그 직후 피고에게 위 토지 중 1/2지분(토지 전체의 1/4지분)을 증여하였다.

(3) 한편, G도 2020. 12. 4. 피고에게 이 사건 2토지의 139000/3279270지분 중 69500/3279270지분에 관하여 '2020. 12.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관련 소송의 종료

D는 2021. 6. 15. C 등 자녀들에 대한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한편, 위 법원은 2021. 6. 17. 'E는 D에게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고는 2021. 8. 6. C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에 따라, C는 원고에게 구상금 20,098,630원 및 그 중 원금 2,000만원에 대한 2021. 4. 9.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C가 2021. 8. 27. 그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함에 따라 계속된 구상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2056252)에서 2021. 11. 24. 청구인용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하여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다287730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구상금)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성립해 있었던 점, 이 사건 처분행위 직전인 2020. 12. 1.경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위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원고가 2021. 3. 9. N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구상금 채권이 현실화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반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반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2) 이 사건 합의 당시 E는 이 사건 1, 2토지 및 이 사건 I 토지를 D 또는 D가 지정하는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 D가 위 합의의 이행을 구하는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되던 중, C는 2020. 12. 3. 이 사건 2토지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I 토지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합의해지하여 E에게 반환한 사실, E는 그 즉시 피고에게 이 사건 I 토지의 1/2지분을 증여한 사실, G도 2020.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2토지의 139000/3279270지분 중 69500/3279270지분을 증여한 사실, 이에 따라 D는 2021. 6. 15. C 등 자녀들에 대한 소를 모두 취하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위 인정사실에, ① 이 사건 1, 2토지, 이 사건 I 토지 등 E와 자녀들 명의의 부동산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부친 D가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들로 보이는 점, ② E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D나 D가 지정하는 피고 등에게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합의의 경위, D, E 및 C 등의 관계에 비추어, 위 합의는 E가 자신 및 자녀들을 대표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관련 소송 기록에 나타난 E의 태도를 보면, 오히려 D에게 적극적으로 이 사건 합의의 이행을 수령하라는 의사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행위는 위와 같은 E, C 등에 의한 이 사건 합의의 이행 행위의 일부로 보이는 점, ⑥ 피고는 위 합의 이행 당시 D의 배우자로서 D에 의해 이행의 상대방으로 지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이 사건 합의의 이행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도균

별지